



글 | 김성남
 (사)한국화장실협회 사무국장

아직도 시민의식이 문제라구요? (I)

이제 유지관리시스템 정착이 과제가 되어야 한다

시민의식이 낮아서 화장실이 엉망이라는 생각에 대한 유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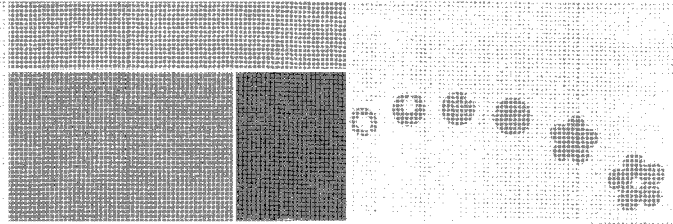
화장실문화정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설과 유지관리, 이용자의 시민의식이라는 세가지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세가지는 무엇이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어느 한 부분에만 책임을 전가하기가 힘들 정도로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의식이 문제다라는 식의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특히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고 관리해야할 책임을 진 곳에서 이 말이 쓰여지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공중화장실은 특수한 공간이다. 100명의 이용자가 높은 시민의식으로 잘 사용하더라도 101번째 이용자가 잘 못 사용한다면 그 후부터는 엉망이 되어버린다. 쓰레기 더미가 길가에 버려져 있으면 아무 죄의식 없이 담배꽁초나 휴지를 그 위에 버리고 지나간 경험은 나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과 똑 같다. 휴지통이 넘쳐나고, 휴지나 담배꽁초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칫과 껌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부스 내에서 하는 시민의 행동을 보고 시민의식이 낮다고 이야기 하면 "한국사람은 이래서 안돼"하는 식의 자기비하 밖에 되지 않는다. 101번째 사람 한명으로 인

해 무고한 100명이 함께 욕을 먹는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시민의식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프랑스 파리의 길거리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빈 캔을 버릴 곳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은 한국인 밖에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인들은 아무 스스럼없이 길에 버린다는 것이다. 물론 다음날 아침이면 길은 깨끗해진다. 새벽 일찍 청소하는 것이다.

또 지난번 TV에서 일본에서 정지선을 얼마나 잘 지키는 지를 한국과 비교하여 보여 준 적이 있다. 물론 테마는 기초질서의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걸 보면서 나도 '야 정말 한국인의 의식에 문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후 뉴스에서 한국의 안전벨트 착용율이 90%가 넘는 반면에 일본은 50%대라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핵심은 기초질서 단속이다. 의식의 뒷면에는 행정기관의 의지가 담긴 단속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그 뉴스에 따르면 일본은 정지선을 어기면 7000엔 정도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오랫동안 되면 자연히 몸에 배이게 되는 것이다. 마치 한국사람들이 요사이 벌 단속이 없더라도 자동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매듯이. 아마 우리의 경우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다고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또 싱가포르의 깨끗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자기 나라를 "Fine City"라고 홍보한다. 좋은 도시의 의미와 벌금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관광지의 상콤코너에는 Fine City라고 쓰고 밑에는 각종 기초질서를 어겼을 때 내야 하는 벌금을 빼곡히 써놓은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다. 인간의 마음은 전세계 어디나 똑 같다. 어느 광고의 카피처럼 지켜야 할 것은 지킨다 하는 마음은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하며 그 습관을 지킬 것은 지켜야 모두가 편하다는 인식의 공유 하에 행정기관의 의지가 담긴 단속이 길러준다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둘째라면 서운할 정도의 교육열,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스스로 폄하하고 비하하여서는 안되며 화장실문제에 있어서도 단속의 수단을 강구하고 더럽고 지저분해진 것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관리 주체의 관리 부족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고속도로 휴게소화장실과 철도역의 화장실의 차이이다. 다들 알다시피 두 기관의 화장실의 시설개선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휴게소의 경우는 화장실에서 담배연기가 나지 않고 철도역화장실은 너구리 잡는 거 마냥 연기가 자욱하다. 차이는 관리인 것이다. 휴게소화장실의 경우는 관리실명제를 도입하여 2001년 한해동안 드잡이할 정도로 화장실 내에서 담배피우는 사람들과 실랑이를 한 반면 철도역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 관리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5시 이후에는 청소담당자가 퇴근해 버리면 끝이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다지만 어렵는 일이다. 휴게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은 높고 철도역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의식이 낮은 것인가? 유지관리의 정도가 시민의 의식을 결정한다고 본다면 지나친 비약인가?

한국의 화장실을 견학하러 온 싱가포르 환경부장관에게서 배운다

지난 11월 싱가포르에서 귀한 손님이 협회를 찾아 온 일이 있다. 싱가포르화장실협회장과 함께 발라이 사다시반 환경부장관 일행이 한국의 화장실을 견학하러 온 것이다. 깨끗한 도시국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몇 년 전만 해도 더럽고 불결하여 외국여행객 불편 사항중 빠짐없이 우선적으로 꼽혔던 공중화장실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세계 유수언론기관에서 관심있게 다루는지 직접 보기 위하여 왔다고 하였다. 수원월드컵경기장화장실, 반딧불이 화장실과 여주(하), 문막(하) 휴게소를 둘러보고 시설과 관리상태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특히 화장실을 깨끗이 하면 된다는 생각을 넘어 문화 공간으로 삼은 아이디어에 놀라워했고, 짧은 기간에 변하게 된 계기에 대해 궁금해하였다.

한 휴게소에서 브리핑을 듣고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고 질문을 하였다. 브리핑을 하던 소장도, 나도 긴장을 하였다. 관계자가 "인건비를 포함하여 월 1,500만원(약12,500달러)이 조금 더 든다"고 대답하였고 듣고 있는 나는 그 액수에 놀라고 있었는데 사다시반 장관은 다시 질문을 하였다. "한 달에 휴게소를 찾는 고객은 얼마나 되느냐?" 소장은 15만명가량된다고 대답하였다. 잠시 생각하더니 장관은 "이용고객당 10센트(120원)도 되지않는 돈으로 만족을 줄 수 있다니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라





고 감탄하여 나는 또 한 번 놀라야 했다.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고객 만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고는 물론 "화장실은 단순한 생리공간이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최일선의 서비스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서도 생각지도 못한 접근 방법인 것이다. "아름다운 화장실은 나라의 얼굴입니다"고 외치고 다니면서도 아름다운 화장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의문에는 답을 내지 못하고 결국 시민의식의 고양에서만 해답을 찾았던 한계를 극복하게 된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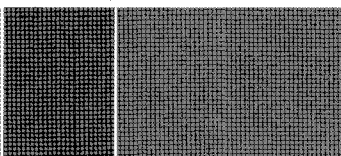
공중화장실에 대한 이해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공원이나 관광지의 화장실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립한 화장실로 이해되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중화장실법안에 보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이라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고 따라서 이 법의 적용범위는 고속도로 및 국도의 휴게소, 주유소, 대규모 점포 및 정기시장은 물론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물의 화장실까지 다중이 이용을 하는 대부분의 화장실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볼 때 공중화장실의 개소는 현재 추산하기조차 어렵다.

지난 2001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공중화장실은 6,486개소로 대소변기가 58,788개(남자용:37,707개 여자용:21,081개)로 되어있다. 물론 이 통계는 환경부가 처음 실시한 것으로 광역시·도의 보고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보고를 신뢰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각 시도별로 기준이 제각각 이어서 통계자료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념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중화장실의 실태를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 통계를 정확히 하여야 하는데 지자체의 경우는 보통 10개과가 이러저러한 화장실의 관리 책무를 맡고있어 정확한 통계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공중화장실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서 분산되어있는 화장실자료의 수집을 통해 자료의 분석 및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서부터 관리 시스템을 조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수원시의 예를 보면 지난 98년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얻어 청소과내에 화장실문화계를 신설하여 전체적인 자료 통합과 계획을 수립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고 서울, 부산 등 월드컵개최도시를 중심으로 한시적인 팀제를 편성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하였다.

관리책임주체가 불명확하기는 중앙단위도 마찬가지이다. 시설 및 지역에 따라 화장실관리는 행정자치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등의 책임이다. 이렇게 공중화장실의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관리 주체가 없다는



말과 같다. 다행히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의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로 정해졌다. 이것은 차후 공중화장실의 관리가 핵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2년이상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정자치부는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적극적인 행동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고, 문화관광부는 월드컵이 끝났으니 이제 관심 밖의 일로 되었고, 환경부는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오염도를 체크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관리체계를 잡는 일은 머나먼 후의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또 책임있는 중앙부처의 부재로 인해 지자체의 공중화장실실태는 심각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화장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지난 지자체 선거로 인해 단체장이 바뀐 지역에서는 화장실문제를 시민편의시설의 확충 및 국가, 지역이미지 개선의 차원이 아니라 전임 단체장의 치적으로 생각하여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향까지 있어, 기껏 조성되어진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운동이 용두사미가 될 우려까지 자아내고 있다.

공중화장실법(안)의 적용범위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화장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自然公園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4. 流通産業發展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정기시장
5. 都市公園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道路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
7. 鐵道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8. 都市鐵道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9. 港灣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종합여객시설
10. 遊船及渡船事業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11. 石油事業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體育施設의 설치·이용에관한法律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13. 航空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14. 공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
16.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